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고시개정 안내 (2014-170~174호)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70~174호(2014. 9. 30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39호, 2014.8.29.), 「조혈모세포이식의 영양급여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- 150호, 2008.12.1.),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70호, 2014.9.30.),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24호, 2014. 7. 29) 및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68호, 2014.9.29.)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※ 붙임 : 고시 2014-170~174호 개정내역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유소영 팀장 정운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492 (2014.10.01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4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sy@kha.or.kr